



전 주 시



수신 롯데쇼핑(주) 대표이사 강희태 귀하
(경유)

제목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해지에 대한 동종업계 제공모 여부 회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롯데쇼핑 백신사개 제2018- 28호(2018.6.29)호로 요청하신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해지 후, 우리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귀사와 유사한 동종업계 출점 가능성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전주시민들의 가장 진한 추억이 집적된 역사문화적 상징공간인 종합경기장은 도심생태공원과 문화예술콘텐츠를 담아 전주시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나. 귀사에서 염려하는 동종업계(대형 판매시설)에 대한 개발계획(제공모 등)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전 주 시



주무관	최기훈	전시컨벤션팀	장	이동식	경기장이전팀	장	김형환	체육종합시설	추진단장	최병협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협조자

시행 체육종합시설추진단-1112 (2018. 6. 29.) 접수

우 5499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서노송동) / jeonju.go.kr

전화번호 063-281-5004 팩스번호 063-281-2625 / chkh4321@korea.kr / 비공개(5)

개인정보보호! 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분류기호 : 백신사개 제2018-28호 (☎ 02-2118-6837) 2018. 6. 29
수 신 : 전주시 체육종합시설추진단
참 조 : 생태도시국, 전시컨벤션팀
제 목 :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해지 알림에 대한 회신의 件

1. 귀 시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본건 공문은 귀 시가 2018. 6. 11. 송부한 체육종합시설추진단-996 공문("본 공문")에 대한 회신입니다.

3. 우선 당사는 귀 시에서 공모한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및 호텔 민간투자사업" (이하 "본 사업")의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2. 12. 31. 귀 시와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이하 "본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당사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15. 8. 5. 부터 총 9차례에 걸쳐 사업 이행촉구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4. 그러나 당사의 사업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귀 시는 2015. 7. 28. "본 사업"을 시 재정사업으로 변경 후 이를 사유로 협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통보하였고, 최종적으로 "본 공문"을 통해 협약해지에 대한 당사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5. 이에 당사는 협약해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재정사업의 개발계획 변경(판매시설)에 따른 동종업계 출점여부입니다.

6. "본 협약" 제44조 2항에 따르면 귀 시가 본 협약 해지 후 당사와 유사한 사업계획을 가진 동종업계에 재공모할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귀 시는 추후 재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판매시설로의 개발계획 변경 가능성과 이 경우 당사와 유사한 사업계획을 가진 동종업계 출점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2018. 7. 13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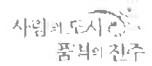
롯데쇼핑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강희태



전주정신 「한국의 꽃심, 전주」



전 주 시



수신 롯데쇼핑(주) 대표이사 강희태 귀하
(경유)

제목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해지 알림에 대한 회신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3225(2016.12.19)호 및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333(2016.3.10)호와 관련입니다.
3. 우리시에서는 지난 2012.12.31.일 귀사와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이하 “본 사업”) 협약” 을 체결하였으나, 지역 내 반대여론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 을 전주시의회 동의를 거쳐 시 재정사업(이하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귀사와 상호 협의하에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으나 협의의 진척이 없어 불가피하게 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4. “본 사업” 은 지역 내 여론 등 사정이 변경되었고 전주시의회의 결정을 통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인 만큼 협약 이행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5. 기 통보한 것처럼 “본 사업” 협약 해지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거듭 밝히는 바, 협약 해지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2018. 6. 30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협약 해지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전 주 시 장

주무관 최기훈 전시컨벤션팀 장 이동식 체육종합시설 추진단장 최병협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2018. 6. 11.

협조자

시행 체육종합시설추진단-996 접수

우 5499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서노송동) / jeonju.go.kr

전화번호 063-281-5004 팩스번호 063-281-2625 / chkh4321@korea.kr / 비공개(5)

개인정보보호! 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분류기호 롯데신사2 제2016-9호 (☎ 02-2118-6852)

수 신 전주시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참 조 생태도시국, 전시컨벤션담당

제 목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관련 의견 회신 件

2016. 12. 29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시는 2016. 12. 19.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3225 공문을 통해 귀 시와 당사간 체결한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이하 "본 사업") 협약(이하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본 협약 제46조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을 당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그러나, 귀 시가 통지한 해지사유인 본 협약 제42조 제2항 제3호는 본 협약의 해석상 귀 시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당사가" 귀 시에 대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이며, 본 협약 체결 당시와 현재간 특별한 사정 변경 또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이에 당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협약이 유효하며, 본 협약상 당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귀 시께서는 이 점 깊이 고려하시어 본 협약상 귀 시의 의무 이행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끝.



롯데쇼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원준



전주정신 『한국의 꽃심, 전주』



전 주 시



수신 롯데쇼핑주식회사

(경유)

제목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해지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롯데신사2 제2016-47호(2016.11.21.)와 관련입니다.

3. 우리시에서는 지난 2012.12.31.일 귀사와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이하 “본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역 내 반대여론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을 전주시의회 동의를 거쳐 시 재정사업(이하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귀사와 상호 협의하에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으나 귀사에서 해지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밝히는 등 협의의 진척이 없어 불가피하게 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4. 우리시에서는 지역 내 여론 등 사정이 변경되었고 전주시의회의 결정을 통하여 추진되는 사항인 만큼 “본 사업” 협약 이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거듭 밝히며,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 통보한 것처럼 “본 사업” 협약 해지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거듭 밝히는 바,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귀사의 협조를 촉구하며, 만일 협약 해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빠른 시일 내에 협약서 제46조(분쟁의 해결)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계획 1부. 끝.

전 주 시



주무관	육문주	전시컨벤션팀 장 정진	종합경기장개 발추진단장 박병국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전결 2016. 12. 19.
협조자					
시행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2016. 12. 19.)		접수		
우 5499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서노송동, 전주시청) / www.jeonju.go.kr				
전화번호 063-281-5004	팩스번호 063-281-2625	/ youkmjoo@korea.kr		/ 비공개(5)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5 월드컵경기장 일원
- 사 업 비 : 760억원(건립비 620억원, 토지매입비 140억원)
- 부지면적 : 122,958㎡(기확보 82,486㎡, 미확보 40,472㎡)
- 사업내용 : 1종 육상경기장 15천석, 야구장 8천석

□ 추진상황

- 사업계획 의회 동의 : 2015. 7.28
-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의결 : 2015.12. 8
-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해지 알림 : 2016. 1.24
※ 그 간 2016. 4.25일까지 6회에 걸쳐 전주시 입장 공문 발송
- 타당성조사 의뢰 약정 체결 : 2016. 2.17
-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2016. 8.16
- 중앙투자심사 의뢰(전주시/전라북도) : 2016.8.16/08.31
- 제4차 중앙투자심사(재검토) : 2016.11. 8

□ 이후 추진계획

- 2017년 제2차 중앙투자심사(행자부) : 2017.상반기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 2017.06~07
- 토지매입 추진 : 2017.06~11
- 기본 및 실시설계 확정 : 2017.08~2018.03
-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이행 및 착공 : 2017.11~2018.08
- 이전사업 완료 : 2020.08

분류기호	롯데신사2 제2016-47호 (☎ 02-2118-6852)	2016. 11. 21
수신	전주시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참조	생태도시국, 전시컨벤션담당	
제목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관련 의견 전달 件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12. 12. 31. 귀 시와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이하 "본 사업") 협약(이하 "본 협약")을 체결한 이후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 및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16. 11. 9. 한겨레 등)에 따르면, 귀 시는 본 협약의 당사자인 당사를 배제하고, 본 사업을 市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절차를 진행하였고, '17.2월경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당사는 본 협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이에 따라 본 협약상 당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을 알려드리오니 귀 시에서도 본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

16°

롯데쇼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원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전 주 시



수신 롯데쇼핑주식회사
(경유)

제목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관련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롯데신사2 제2016-18호(2016.4.15.)와 관련입니다.

3. 우리시에서 그 동안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귀 사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은 우리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전주시의회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귀 사에서도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귀사에서 언급한 최근 언론 보도(2016.4.12. 전북일보 등)건은 종합경기장 개발방식에 대하여 귀사와 협약 체결하였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민자 사업이 아닌, 우리시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하게 개발 구상을 검토 중인 사항이 보도된 것임을 양지하시고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그 동안 귀사에서 보내주신 노력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어나 지역 내 사정과 여론 등을 고려하여 전주시의회의 결정을 거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 만큼 깊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전 주 시



주무관 육분주 전시컨벤션담당 정진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남종희 샘테도시국장 양연수 2016. 4. 25.

협조지

시행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2016. 4. 25.) 접수
-849

우 54994 전라북도 전주시 완신구 노송광장로 10, (서노송동, 전주시청) / www.jeonju.go.kr

전화번호 063-281-5004 팩스번호 063-281-2615 / youkmjoo@korea.kr / 비공개(5)

분류기호	롯데신사2 제2016-18호 (☎ 02-2118-6847)	2016. 4. 15
수신	전주시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참조	생태도시국, 전시컨벤션담당	
제목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해지 관련 의견 회신 ㉸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시의 2016. 3. 10.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333 공문 관련 건입니다.

3. 당사는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이하 "본 사업") 협약(이하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 및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귀 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4. 한편, 시의회 의결에 따라 본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본 협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언론보도(2016. 4. 11. 전북일보 등)와 같이 귀 시가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방식에 대한 공모를 추진한다면 본 협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중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롯데쇼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원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전 주 시



수신 롯데쇼핑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원준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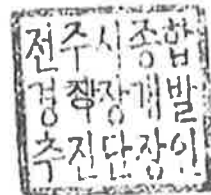
제목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해지 件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롯데신사2 제2016-9호(2016.02.26.)와 관련입니다.

3. 우리시에서는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1493(2016.01.24.)호 및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59(2016.02.17.)호 공문을 통해 알려드린바와 같이,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은 전주시의회 동의를 거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귀사와 체결한 협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4. 따라서, 더 이상 귀사와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끝.

전 주 시



주무관 육문주 전시컨벤션담당 정진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조석원 생태도시국장 선경 2016. 3. 10. 백순기

협조자

시행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2016. 3. 10.) 접수
-333

우 5499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서노송동, 전주시 / www.jeonju.go.kr
청)

전화번호 063-281-5004 팩스번호 063-281-2615 / youkmjoo@korea.kr / 비공개(5)

분류기호	롯데신사2 제2016-9호 (☎ 02-2118-6847)	2016. 2. 26
수신	전주시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참조	생태도시계획과, 전시컨벤션담당	
제목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 해지 관련 의견 회신 件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시의 2016. 2. 17.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59 공문 관련 건입니다.

3. 귀 시가 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본 협약 제42조 제2항 제3호는 귀 시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현재까지 유효한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귀 시에서도 이 점 깊이 고려하시어 재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

22

롯데쇼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원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전 주 시



수신 롯데쇼핑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원준
(경유)

제목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해지 재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롯데신사2 제2016-5호(2016.02.12.)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전주시 생태 도시계획과-1493(2016.01.24.)호 공문을 통해 알려드린바와 같이 귀사와 체결한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은 이미 해지되어 더 이상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입니다.

3. 따라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더 이상 귀사와 상호협력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귀사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끝.

전 주 시



주무관	육문주	전시컨벤션담당	정진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조석원	생태도시국장	전경 2016. 2. 17. 백순기	
협조자								
시행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59 (2016. 2. 17.)				접수				
우 5499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서노송동, 전주시청)						/ www.jeonju.go.kr
전화번호 063-281-5004		팩스번호 063-281-2615		/ youkmjoo@korea.kr		/ 비공개(5)		

분류기호	롯데신사2 제2016-5 호 (약 02-2118-6847)	2016. 2. 12
수신	전주시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	
참조	전시컨벤션담당	
제목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 해지 관련 의견 회신 件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시는 2016. 1. 24. 생태도시계획과-1493 공문을 통해 귀 시와 당사 간 체결한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이하 “본 협약”) 제4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었음을 당사에 통지하였습니다.

3. 그러나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는 본 협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으며, 귀 시도 이 점을 깊이 고려하시어 상호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4. 한편, 상기 조항(본 협약 제42조 제2항 제3호)은 본 협약의 해석상 귀 시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당사가” 귀 시에 대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판단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

롯데쇼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원준





전주시

전 주 시



수신 롯데쇼핑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원준
(경유)

제목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해지 알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2012. 12. 31.일 귀사와 체결한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이하 “본 협약”)」 과 관련하여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귀사에서 수익사업으로 제안한 복합문화상업시설에 대한 지역 내 반대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전주시의회에서도 반대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 협약의 해지에 관해 귀사와 협의(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15550, 2015. 09. 18.)한 결과, 귀사에서는 본 협약을 해지할 의사가 없으며 당초 공모지침과 본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우리시에 요청(롯데신사2 제2015-35호, 2015. 10. 08.)하였으나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협약서 제4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본 협약은 해지되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4. 또한, 본 협약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의 개시는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2번의 사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의 승인이 난망함에 따라 본 사업을 우리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회 동의 절차를 마쳐 사정이 변경되었고, 귀사에서 제안한 복합문화상업시설을 통한 수익사업이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커지는 바, 넓게 보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에 의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귀사와 체결한 협약의 이행은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5. 그 동안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위해 귀사에서 보내주신 노력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끝.

전 주 시



주무관	육문주	컨벤션유치담당	정진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조석원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부시장	조봉업	★시장	2016. 1. 24. 김승수				

협조자

시행 생태도시계획과-1493 (2016. 1. 24.) 접수

우 5499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서노송동, 전주시 / www.jeonju.go.kr
청)

전화번호 281-5004 팩스번호 281-2615 / youkmjoo@korea.kr / 비공개(5)

분류기호	롯데신사2 제2015- 사 호 (☎ 02-2118-6847)	2015. 10. 8(木)
수신	전주시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	
참조	전시컨벤션담당	
제목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 해지 관련 의견 회신 件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가 보내온 2015. 9. 18.자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이하 "본 협약") 해지 협의(생태도시계획과-15550)」 공문과 관련하여, 既 통지한 바와 같이 당사는 귀사의 공모절차에 따라 선정된 민간사업자로서 귀사를 신뢰하고 본 사업을 성실히 준비해 왔는 바, 귀사의 일방적인 본 사업 변경 및 해지 논의는 이러한 당사의 노력과 귀사와의 신뢰, 당초의 사업 취지를 무색케 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3. 특히, 본 사업에 관한 공모 당시 전주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주시민의 약 68%가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및 『호텔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복합지구 개발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에도 일부 상인들의 반대 민원이 있었고, 그 이후 특별히 달라진 사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귀사가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일부의 반대민원을 해결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4. 이에 당사는 본 협약을 해지할 의사가 없으며 본 협약에 따라 성실히 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귀사에서도 당초 공모지침과 본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쇼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원준

2015. 10. 8
 124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정부3.0」 구현



전 주 시



수신 롯데쇼핑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원준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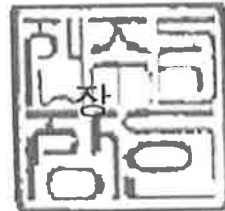
제목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해지 협의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롯데신사2 제2015-30(2015.9.11.)호와 관련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및 호텔 민간투자사업』 의견 재요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2012.12.31.일 귀사와 우리시 간 체결했던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과 관련하여, 귀사에서 제안한 수익시설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들의 반대 민원으로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사업 계획 변경계획” (우리시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지난 2015.7.28일 우리시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3. 따라서 귀사에서 제안한 사업이 협약서 제42조제3항 규정에 의한 “수익 시설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개발계획 실현이 어려울 경우” 에 해당되어 상호 협의에 의하여 사업협약을 해지하고자 하오니 귀사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전 주 시



주무관	육문주	건벤선유치담당	정진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담당	조석원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부시장	전결 2015. 9. 18.						
	조봉업						
협조자							
시행	생태도시계획과-15550		(2015. 9. 18.)	접수			
우 5499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서노송동, 전주시청)		/ www.jeonju.go.kr				
전화번호	281-5004	팩스번호	281-2615	/ youkmjoo@korea.kr		/ 비공개(5)	

분류기호	롯데백화점 제2015-30 호 (호 02-2118-6847)	2015. 9. 11(금)
수신	전주시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	
참조	전시컨벤션담당	
제목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및 호텔 민간투자사업』 의견 재요청 件	

1. 귀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시는 2015.8.19.자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및 호텔 민간투자사업(이하 "본 사업")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생태도시계획과-13740)』 공문을 통해 본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2015. 7. 28. 이에 관한 의회 동의절차를 마쳤으며 이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어렵게 되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을 당사에 통지하였습니다.

3. 나아가 귀시는 위 공문에서,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본 협약")』 제42조 제2항 제2호(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및 제3항 제3호(수익시설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개발계획실현이 어려운 경우)에 따라 협약서의 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4. 그러나 귀시가 위 공문으로 공식적이고 본 협약의 해지를 당사에 통지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할 뿐더러, 귀시가 해지의 사유로 거론하는 본 협약 제42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 등은 당사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귀시가 일방적으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5. 더욱이 귀시가 지역상생문제를 포함한 사업변경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당사를 배제하고 어떠한 사전협의도 진행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본 사업을 변경함에 따라, 귀시를 믿고 본 사업을 성실히 준비해 온 당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6. 이에 귀시에서는 본 협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공식적이고 명확한 의사를 2015. 9. 18.까지 당사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귀시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당사는 이에 대한 법적대응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롯데쇼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원준





전 주 시



수신 롯데쇼핑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원준

(경유)

제목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및 호텔 민간투자사업 의견요청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현안사업인 전주종합경기장 이전과 호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의 말씀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롯데신사2 제2015-21호 (2015.8.5.)호와 관련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및 호텔 민간투자사업 의견요청에 대하여 회신 합니다.

2. 2012.12.31.일 귀사와 우리시간에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귀사에서 종합경기장 부지에 수익사업으로 제안한 복합문화상업시설로 인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들의 우려가 있어 우리시에서는 지역상권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지역상권 상생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귀사와 협의를 하는 등 사업의 정상추진을 노력하였습니다.

3. 한편 전주시 의회에서는 롯데쇼핑의 복합쇼핑센터 등의 수익시설과 관련한 반대여론이 부각되는 등 지역 내 불신과 갈등을 이유로 기부대양여 방식의 민자사업 재검토를 위하여 전라북도와의 양여조건 재협의를 우리시에 요구 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7월 28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를 마쳤으며, 이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어렵게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5. 더불어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 제42조(사업협약의 해지) 제2항 제2호(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및 제3항 제3호(수익시설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개발계획 실현이 어려운 경우)에 따라 협약서의 해지가 불가피함을 알려 드리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전 주 시



주무관	육문주	컨벤션유치담당	정진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조석원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부시장	조봉업	시장	2015. 8. 19. 김승수				
협조자							
시행	생태도시계획과-13740	(2015. 8. 19.)	접수				
우	5499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서노송동, 전주시청)	/ www.jeonju.go.kr				
전화번호	281-5004	팩스번호	281-2615	/ youkmjoo@korea.kr		/ 대국민 공개	

분류기호 : 롯데신사2 제2015-23호 (☎ 02-2118-6847) 2015. 8. 18
수 신 : 전주시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
참 조 : 전시컨벤션담당
제 목 :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및 호텔 민간투자사업』 의견 재요청 편

1. 귀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2015. 8. 5.자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및 호텔 민간투자사업(이하 "본 사업")』 의견 요청편 공문을 통해 2015. 8. 14. 까지 귀시의 의견을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신기한이 경과되도록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3. 귀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사는 2012. 12. 31. 귀시와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7년 내 판매시설 오픈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인력 투입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4. 그런데 귀시가 민간사업자인 당사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2015. 7. 28. 본 사업을 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고, 시민공원 조성(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득함에 따라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진행될 것을 신뢰하고 본 사업을 추진해온 당사의 사업계획 및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5. 이에 귀시의 사업 변경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의견을 재요청하오니, 2015. 8. 28.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차레에 걸친 당사의 의견 요청에도 불구하고 귀시가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을 경우 법적 대응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롯데쇼핑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이원준



분류기호 : 롯데신사2 제2015-21호 (☎ 02-2118-6847) 2015. 8. 5
수 신 : 전주시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
참 조 : 전시컨벤션담당
제 목 :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및 호텔 민간투자사업』 의견 요청 件

1. 귀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귀사에서 공모한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및 호텔 민간투자사업”(이하 “본 사업”)의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2. 12. 31. 귀사와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이하 “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당사는 본 협약상 귀시의 의무사항인 의회 승인이 지연되어 본 사업 개시가 수년간 늦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신뢰하고 귀시의 다양한 요구사항(경기장 존치 등)을 반영하는 등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4. 그런데 귀시는 2015. 7. 14. 본 사업을 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고 시민공원을 조성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불과 2주만인 2015. 7. 28. 당사는 이러한 본 사업 변경안이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5. 당사로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귀시가 본 협약상 의무에 반하여 민간사업자인 당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본 사업 변경안을 추진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6. 더구나 의회 승인 후 지금까지도 귀시는 당사에 어떠한 의견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의 민간사업자로서, 당사는 본 사업 변경안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귀시의 공식적이고 명확한 의견을 요청하오니, 2015. 8. 14. 까지 당사에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롯데쇼핑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이원준

